

의안번호	2200258
의 퇴 인	박성훈 의원
회 답 일	2024.7.3.
추 계 번호	24B070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전체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71억원, 2029년 201억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932억원(연평균 186억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지급기간 등 (안 제76조제1항)	171	179	187	194	201	932	186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출산에 대한 인식 등 행태 변화와 배우자출산휴가 관련 제도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 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6조제1항(지급 기간 등)(제1항)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76조제1항(지급 기간 등)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 개정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2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한 고용보험 지급기간이 연장될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지급기간)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전체에 대해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원대상 기관은 현행과 같이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함
 -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256호)에 따른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은 20일임
 -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의 고용보험 지급기간: **현행 5일 → 개정안 20일**

- (사업대상자) 본 추계서에서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의 수급자 수는 통계청의 출생아 수 전망치(중위 기준)에 근거하여 추정함
 - 2023년 출생아 수는 잠정치이므로, 2022년 기준 출생아 수 대비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수급자 수의 비중(6.5%)을 토대로 산출

[표 2] 출생아 수 및 배우자출산휴가 수급자 수

(단위: 명)

	2019	2020	2021	2022	2023
출생아 수(A)	302,676	272,337	260,562	249,186	230,000
배우자출산휴가 수급자수(B)	1,059	18,720	18,270	16,168	15,797
비율(C=B/A×100)	0.3%	6.9%	7.0%	6.5%	6.9%

주: 2023년 출생아 수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고용노동부

- 추계기간 동안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의 수급자 수는 통계청의 출생아 수 전망치(중위 기준)에 2022년 기준 출생아 수 대비 배우자출산휴가 수급자 수의 비중(6.5%)을 적용하여 산출

[표 3]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배우자출산휴가 수급자 수(추정치): 2025~2029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출생아 수 전망치 (중위 기준)(A, 천명)	218	229	239	248	257
배우자출산휴가 수급자 수 (B=A×6.5%, 명)	14,145	14,858	15,507	16,091	16,675

주: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및 고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지급단가) 배우자출산 휴가 급여의 지원단가는 2024년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를 토대로 산출
 -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금)가 지급하는 배우자급여 급여의 상한액을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¹⁾」를 통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4년 기준 상한액(401,910원/5일)을 토대로 산출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 84호

[표 4]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 연혁

(단위: 원)

	2019	2020	2021	2022	2023
상한액	382,770	382,770	382,770	401,910	401,910

자료: 각 연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본 추계서는 2024년 기준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5일)의 상한액(401,910원/5일)이 개정안에 따른 배우자출산휴가 급여가 개정안에 따른 지급기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참고로, 2023년 기준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²⁾에 따른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함)의 상한액이 401,910원이고, 1인당 평균 배우자출산휴가의 수급액이 395,000원 이룬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수급자에게 상한액에 근접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음

[표 5] 배우자출산휴가 수급 현황

(단위: 명,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수급자수(A)	1,059	18,720	18,270	16,168	15,797
총 수급액(B)	397	7,050	6,904	6,146	6,240
1인당 수급액(B/A)	0.375	0.377	0.378	0.380	0.395

자료: 고용노동부

- 본 추계서는 현행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의 지급 상한액(401,910원/5일)이 개정안에서의 지급기간 확대 규모(5→20일)에 비례하여 증가(×3)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

[표 6]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5~2029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수급자 수(A, 명)	14,145	14,858	15,507	16,091	16,675
5일당 지원단가(B, 원)	401,910	401,910	401,910	401,910	401,910
수급기간 연장에 따른 배수(C)	3	3	3	3	3
추가재정소요 (D=A×B×C, 백만원)	17,055	17,915	18,697	19,401	20,106

주: 1.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실제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제도적 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114호

- 추계결과,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전체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71억원, 2029년 201억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932억원(연평균 186억원)으로 추계됨

[표 7]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지급기간 등(안 제76조)	171	179	187	194	201	932	186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출산에 대한 인식 등 행태 변화와 배우자출산휴가 관련 제도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 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서의 주요 전제와 실제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수급자 수 및 지급액 등이 상이할 경우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는 2022년 기준 출생아 수 대비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수급자 수의 비중을 토대로 산출한 금액이므로, 향후 출생아 수 대비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수급자의 비중의 변화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음
- 추계기간 동안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이 일정하다는 전제를 토대로 산출한 금액이므로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이유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go.kr